

#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이성배 의원 외 10명
- 나. 의안번호 : 제836호
- 다. 발의일자 : 2019. 8. 7
- 라. 회부일자 : 2019. 8. 13

### 2. 제 안 사 유

- 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.

### 3. 주 요 내 용

- 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#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
 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- 동 조례안<sup>1)</sup>은 서울에너지공사 경영성과에 대해 사장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- 현행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의2<sup>2)</sup>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‘경영성과계약<sup>3)</sup>’을 체결하여야 하며,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경영평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, 업무 능률성, 공익성,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률 및 연봉인상률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사장에게 지우고 있음.

- 한편, 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전신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설치 조례에서는 제정('84.4.23) 당시부터 공사 사장에게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와 같이 「지방공기업법」, 경영성과계약서에도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에 관해 규정되어 있고 다른 조례에서도 기 반영되어 있는 바, 동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---

1) 이번 회기에 서울에너지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, 서울시설공단,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도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음

2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의2(사장과 경영성과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.  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3) 서울시장-서울에너지공사사장 「경영성과계약서」 제4조(사장의 권한과 책임) ① 사장은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

## [참고자료]

### □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

구 분	평가주체	평 가 지 표
경영평가 (30%)	행정안전부	◦ 공통지표 65%, 공기업별 특성지표 35%
핵심가치평가 (65%)	서울시	◦ 운영성과 40%, 재무성과 30%, 사업성과 30%
서울협약 (5%)	서울시	◦ 7개 사업과제(청년의무고용 확대 시행, 청년 및 고령자 취업 프로그램 마련, 임금피크제, 노동시간 단축, 직접 고용 확대, 공동채용박람회, 노사관계 확립)

### □ 행안부 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률

구 분	가 등급	나 등급	다 등급	라 등급	마 등급
사 장	301~400%	201~300%	100~200%	0%	0%
임 원	201~300%	151~200%	100~150%	0%	0%
직 원	180~200%	130~150%	80~100%	30~50%	0%

※ '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(행안부)에 의거, 기관장도 행안부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

- 사장 및 임원의 경우, “라” 등급은 연봉 동결, “마” 등급은 5~10% 연봉 삭감